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조인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55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3.

발의자 : 조인철 · 주철현 · 박희승

안도걸 · 양부남 · 고민정

정준호 · 신장식 · 김동아

최혁진 · 민형배 · 박수현

모경종 · 이건태 · 서삼석

박지혜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는 침해사고 발생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되고,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가 의심되는 정황 단계에서의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. 침해사고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 방지에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, 기업들은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존재함. 이 경우 조기 대응 실패로 대규모 확산 ·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함.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

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)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1항 및 제4항에”로 한다.

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,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점검 결과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8조의3(침해사고의 신고 등)</p> <p>① ~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</p>	<p>제48조의3(침해사고의 신고 등)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,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.</u> 이 경우 점검 결과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</p> <p>⑤ 제1항 및 제4항에----- ----- ----- -----.</p>